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39

I. 총 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8. 10. 31.
- 회 부 일 : 2018. 11. 5.

II. 예산안 개요

1. 세입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2,809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2,753만원 대비 2% 증액된 규모임(표-1).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245만원, 수수료 수입 640만원, 사업 수입 1,69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233만원임.

<표-1>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당초 예산(A)	2019년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계	27,531	28,090	559	2.0
재산임대수입	2,139	2,454	315	12.8
수수료 수입	8,000	6,400	△1,600	△20.0
사업 수입	16,170	16,903	733	4.3
과징금및과태료등	1,222	2,333	1,111	47.6

2. 세출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70억 200만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 270억 600만원 대비 0.01%가 감액된 규모임(표-2).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4억 5,900만원, 사업비는 255억 4,300만원임.

<표-2>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최종 예산(A)	2019년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계	27,006	27,002	△4	△0.01
행정운영경비	1,403	1,459	56	3.99
사업비	25,603	25,543	△60	△0.23

○ 한편 의회사무처 예산안 중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인 ‘의회비’ (편성목 205)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 5,595만원(5.9%)이 증액된 99억 9,545만원이 편성되었음(표-3).

- 주요 증액 사유는 의원정수 증가(106명→110명), 월정수당 인상(2.6%),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통계목 신설(8,800만원) 등임.

<표-3> 2019년도 의회비 관련 11가지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당초 예산(A)	2019년 예산안(B)	증감액 (B-A)	비고
계	9,439,497	9,995,446	555,949	증 5.9%
① 의정활동비	1,908,000	1,980,000	72,000	의원수 증가분 반영(106명→110명)
② 월정수당	4,852,680	5,166,731	314,051	2019년 월정수당 공무원보수 인상을 (2.6%) 반영 (월 3,815,000원 → 3,914,190원)
③ 의정운영공통경비	963,920	1,015,242	51,322	<총액한도제> 의원수 증가에 따른 총액한도 증액분 반영
④ 의원 국외여비	470,243	487,988	17,745	<총액한도제> 의원수 증가분 반영(106명→110명)
⑤ 의원 국내여비	187,800	198,000	10,200	의원수 증가분 반영(106명→110명)
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15,200	396,120	△19,080	<총액한도제> 사·도협의회 의장 단체 한도와 편성액 감액
⑦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142,000	142,000	-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132,000천원 자체교육 강사료 10,000천원
⑧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	88,000	88,000	<민간기관 위탁교육비 신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계목 신설
⑨ 의장 협의체부담금	149,844	154,046	4,202	기본부담금 및 의원정수부담금 증가 실무위원회시도 특별부담금 반영
⑩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91,590	188,116	△3,474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원 감소 (2018년 하반기 106명 → 2019년 89명)
⑪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58,220	179,203	20,983	보험요율 및 월정수당 인상분 반영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

- (2017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3개 항목의 총액한도제 도입, 의원역량개발비 신설

- (2018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통계목 신설 및 총액한도제 적용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 예산안 검토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 예산대비 2% 증액된 2,809만원이 편성되었음(표-4).

<표-4>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당초 예산(A)	2019년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계			27,531	28,090	559	2.0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	2,139	2,454	315	14.7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8,000	6,400	△1,600	△20.0
	기타 사업수입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16,170	16,903	733	4.5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및 과태료등	의원용 노트북 및 태블릿 PC 변상금	1,222	2,333	1,111	90.9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은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2만원이 증액되었음.
- 수수료 수입(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최근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60만원이 감액되었음.

- 기타사업수입(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은 '19년 전망 물가상승률(2%)을 감안해 전년대비 73만원이 증액되었음.

- 한편,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의원용 노트북 및 태블릿 PC 변상금'은 제9대 의회 임기 종료 후 기 지급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분실했거나 미반환한 시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총 12건, 380만원 중 233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 동 금액을 편성했음.

- 그러나 지난 제8대 의회 임기 종료 후 총 30건, 1,12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 중 4건, 174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전례가 있으므로, 제9대 의회 임기 종료 후 분실 또는 미반환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시에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세출 예산안 검토

가. 총괄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70억 200만원으로 2018년도 최종예산 대비 400만원(0.01%) 감액되었음(2쪽, 표-2).
 -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4억 5,9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조직 신설 및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600만원(4%)이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255억 4,300만원으로 제9대 의회 임기 종료 및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000만원(0.2%)이 감액되었음.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24조 1,849억 1,8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1%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표-5) 타 광역 의회와 비교¹⁾할 때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5>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의회사무처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의회	22,335	25,184	27,006	27,002
서울시	20,984,104	22,528,929	25,211,115	24,184,918
비율	0.11	0.11	0.11	0.11

※ 2016년~2018년은 최종 확정예산(일반회계)이며, 2019년은 제출된 예산(안)임.

1) 2017년 기준 의회비 비중 : 제주(0.45%), 세종(0.4%), 울산·충북(0.29%), 대전(0.27%)

- 특히 2018년부터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한도액 제한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세출예산안은 신규 사업이 전무하며,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의회사무처는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 의정활동 지원 사업도 확대·강화함으로써 선진 대도시 의회 수준까지 의회비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6).

- ‘의회 신문고 운영 및 민원현장보고서 발간’에 1,700만원(97.9%)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등 개최’에 5,350만원(63.7%)
- ‘의회전문도서관 운영’에 1억 557만원(63.6%)
-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에 2,535만원(53.5%)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에 4,000만원(52.1%)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에 820만원(32.0%)
-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에 4,000만원(22.1%)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6억 786만원(17.4%)
- ‘의정활동수행비’에 5억 2,800만원(6.0%)이 각각 증액되었음.

<표-6>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비율	주요 증액사유
의회 신문고 운영 및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사업설명서p.180>	17,360	34,360	17,000	97.9	▶ 민원관리카드 전산화 등 의회 신문고 기능 개선 : 증17,000천원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등 개최 <사업설명서p.167>	84,000	137,500	53,500	63.7	▶ 공청회 및 토론회 확대 개최 ('18년 30회 → '19년 50회)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사업설명서p.136>	165,931	271,505	105,574	63.6	▶ 전자책, 간행물, 학술DB 구매 단가 인상분 반영 : 증15,550천원 ▶ 노후 도서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편 : 증85,000천원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업설명서p.147>	47,400	72,745	25,345	53.5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TF 운영 확대 : 증25,345천원
국외자매도시의회 대표단 초청 <사업설명서p.120>	76,790	116,790	40,000	52.1	▶ 교류협력 도시 협약에 따라 2019년 초청도시 증가 : 증40,000천원 ('18년 2회 → '19년 4회)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살림 토론회 등 개최 <사업설명서p.162>	25,600	33,800	8,200	32.0	▶ 재정분권 토론회 개최 : 증8,200천원
여론조사 및 의정 모니터 운영 <사업설명서p.110>	180,720	220,720	40,000	22.1	▶ 제10대 여론조사 수요증가를 반영, 조사 횟수 확대 : 증40,000천원 ('18년 10회 → '19년 12회)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설명서p.114>	3,485,300	4,093,162	607,862	17.4	▶ 의정활동 영상홍보 프로그램 제작 편수 증가 : 증324,500천원 ▶ 지역홍보 강화를 위한 주간방송 신규 편성 : 증277,160천원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설명서p.43>	8,781,454	9,309,458	528,004	6.0	▶ '19년 월정수당 인상을 반영(1인당 월3,914천원)에 따른 월정수당 증액 및 보험금 변동 등 : 증331,560천원 ▶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 정수 증가분 반영 : 증123,322천원 ▶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개정에 따른 민간기관 위탁교육비 신설 : 증88,000천원 ▶ 의장협의체부담금 조정 : 증4,202천원

-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감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7).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은 기획편집비 감액 등에 따라 6,840만원(77.4%)
 - ‘의회청사 시설개선’은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시설물 교체 및 보수 등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1억 9,902만원(46.2%)
 - ‘의원수첩 등 제작’은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수첩 및 현황판 제작 등이 완료됨에 따라 1,960만원(44.2%)
 -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신규 물품구매 등이 완료됨에 따라 7,054만원(14.7%)
 - ‘의정 정보화 지원’은 회의장 노후 장비 교체 등이 완료됨에 따라 2억 7,280만원(12.7%)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은 2년 주기로 제작되는 영상홍보물의 제작비 미반영 등에 따라 3,740만원(10.5%)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화보집 제작(7,400만원)은 2018년도에 사업 추진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음.

<표-7>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감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비율	주요 감액사유
의회안내홍보책자제작 <사업설명서 p.95>	88,400	20,000	△68,400	△77.4	▶ '18년 홍보책자 전면 개편에 완료에 따른 기획편집비 감액 : △64,400천원
의회청사시설개선 <사업설명서 p.61>	2,592,718	1,393,700	△1,199,018	△46.2	▶ 제10대 시의회 개원에 따른 노후 유선 통신장비 교체, 의장단 및 상임위 사무실 보수 등 사업 완료 : △ 1,199,018천원
의원수첩 등 제작 <사업설명서 p.31>	44,300	24,700	△19,600	△44.2	▶ '18년 제10대 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수첩 및 현황판 제작 완료 : △19,600천원
의회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사업설명서 p.35>	480,850	410,310	△70,540	△14.7	▶ '18년 제10대 시의회 개원에 따른 신규 물품 구매 완료 : △108,730천원 ▶ 노후 차량 교체 완료(3대) : △146,930천원
의정정보화지원 <사업설명서 p.66>	2,140,124	1,867,329	△272,795	△12.7	▶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장 노후 장비 교체 완료 : △240,055천원 ▶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원스톱 2단계) 구축 : △1,033,621천원 ▶ 노후 통신장비 교체 완료 : △210,741천원
의정활동영상홍보물 제작 <사업설명서 p.105>	357,780	320,380	△37,400	△10.5	▶ 2년마다 제작 되는 영상홍보물 제작비 미반영 : △37,400천원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화보집 제작	74,000	-	△74,000	-	▶ 사업종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계속사업

1) 회의록 발간(속기수수료 관련)

<사업설명서 p.11>

- 회의록 발간은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시의회 전자회의록에 게재하고, 이를 책자와 DVD 형태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843만원이 편성되었음.

<표-8> 회의록 발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38,430	38,430	38,430	-	-

- 이 중 속기 수수료(1,260만원)는 연간 회기 운영 시 부족한 속기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최근 3년간 책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도 모자라 여분의 사무관리비를 사용해왔음.

<표-9> 최근 3년간 속기 수수료 집행 현황(2018.10월 말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18	12,600	5,050	7,550 (제284회 정례회 1,000만원 집행 예정)	나머지 소요 예산(2,450천원)은 회의록 책자 발간 업체 계약 낙찰차액을 활용해 집행 예정
2017	7,500	11,150	△3,650	속기기계유지보수 및 소모품에서 부족분 집행
2016	4,500	8,100	△3,600	

○ 2018.11월 현재 시의회사무처 소속 속기 업무 담당 직원은 16명(정원 18명, 병가휴직 1명, 결원 1명)으로,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별 속기 업무 뿐만 아니라 ▷ 전자회의록 작성·등록, ▷ 토론회·공청회 등 회의 녹취록 작성 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그동안은 본회의,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 중 각종 보고사항(업무 보고·검토보고 등)을 부록으로 게재해왔지만 2017년부터는 각종 보고를 포함해 회의 중 모든 발언을 속기하고 있으며, 공청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속기 업무량이 대폭 늘어남.

<표-10> 서울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공청회 회의 개최 횟수(2018.11월 기준)

구분	소계	회의 개최 횟수(예결특위 제외)	
		특별위원회	공청회
제7대 의회	22회	22회	-
제8대 의회	41회	31회	10회
제9대 의회	95회	73회	22회
제10대 의회	4회	4회	-

○ 따라서, 현재 속기 인력만으로는 충분한 번문·교정시간이 부족한바, 전자회의록 등재 법정시한 제한 등으로 인해 회의록 작성의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²⁾

- 특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임시회에 비해 약 4~5배가량 회의가 증가해 회의록 작성 시간과 인력이 부족함.

2) 전자회의록 등재 법정시한 :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임시회), 30일(정례회) 이내(「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8조제5항)

- 아울러 현재 속기 인력으로는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회의를 전담해 운영하기 어려움.
 -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원회별로 속기 인력 2명이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본회의·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그 밖의 회의는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지 못하고 전체 속기 인력을 교대로 투입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국회의 경우 위원회당 속기 인력은 8.6명으로 서울시의회(약 1.8명)에 비해 7명 가까이 많고, 의회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의회의 경우 속기 보조 인력 예산이 2배 이상 편성·집행되고 있음.

<표-11> 국회·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속기 업무 조직 및 예산 현황

구 분	의원 수 (정원)	상임위원회 수 (운영위원회 제외)	속기 직원 수 (현원)	위원회당 전담 속기 인력	2018년 속기보조인력 예산
서울시의회	110명	9개	16명	1.7명	1,260만원
경기도의회	142명	11개	22명	2.0명	2,446만원
국회	300명	15개	129명	8.6명	-

자료 : 의회사무처 내부 자료

- 이처럼 매년 속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매년 예산 부족 사태를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에 해당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요구되며, 아울러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재산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업설명서 p.15>

-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의회 홍보와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66,950	166,950	166,950	-	-

- 최근 3년간 청소년 의회교실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민주시민아카데미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토론·참여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시의회 홍보와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영시스템은 의회 정치에 대한 이해와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에는 그 대상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음.

<표-13> 최근 3년간 청소년 의회교실 추진 실적

연 도	총 운영횟수 (참여인원)	참여 학생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2018년	13회(1,160명)	11회(940명)	2회(220명)
2017년	14회(1,311명)	12회(1,178명)	2회(133명)
2016년	13회(1,303명)	11회(1,130명)	2회(173명)

<표-14> 최근 3년간 민주시민 아카데미 추진 실적

연 도	추진 실적	사업비	운영기관
2018년	27회 1,011명 (중학생 636명, 고등학생 375명)	37,620천원	흥사단
2017년	32회 1,067명 (중학생 566명, 고등학생 501명)	37,829천원	(사)한국 청소년재단
2016년	21회 462명 (중학생 373명, 고등학생 89명)	28,750천원	

- 따라서 청소년의회교실과 민주시민아카데미에 대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참여 대상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생과 일반인까지 확대해 ‘대학생 모의의회’, ‘학부모 의회교실’, ‘어르신·여성 민주시민아카데미’ 등 사업 범위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일부 대학에서 정규교육과정 중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학생과 지도교수가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이론과 실체를 병행 학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2018.1.1. 제정·시행)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전년도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족도 조사와 사후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3) 의회운영 지원(상임위원회 안전심사 검토보고서 인쇄비 관련)

<사업설명서 p.20>

-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9,364만원(8%) 감액된 9억 9,195만원을 편성했음.

<표-15> 2019년 의회운영 지원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의회운영 지원	1,085,590	991,952	△93,63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463,467 ■ 행사운영비 45,000 ■ 시책업무추진비 231,360 ■ 특정업무경비 196,425 ■ 의원상해부담금 54,000 ■ 배상금 등 1,700

- 이는 제10대 의회 개원준비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완료되고, 의장기 체육대회(6,000만원)와 족구대회(6,000만원) 사업예산을 ‘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해 편성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임.

- 특히, 의회사무처는 ‘의회운영 지원 예산’ 사무관리비 4억 6,347만원

중 4,950만원을 상임위원회 안전심사와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인쇄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배정과 집행은 당초 편성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

- 당초 해당 예산은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각종 의안의 심사보고서를 배포하는데 소요되는 인쇄비용 등으로 편성했으나,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심사보고서 인쇄 등에 따른 각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필요한 각종 인쇄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로는 의정담당관이 포괄예산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재배정해 집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배분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매년 예산안과 결산 예비심사보고서(50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때마다 인쇄비 부족을 호소하는 등 매우 불합리한 상황을 반복해 겪고 있음.
- 판단컨대 상임위원회가 안전 검토보고와 심사보고서 인쇄 등 의정활동 지원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산 편성안과 같이 매번 임시회 또는 정례회를 앞두고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해 집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의정환경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전문가 활용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새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의원수첩 등 제작

<사업설명서 p.31>

- 시의원 및 시의회 기구, 의정 참고자료를 수록한 수첩 등을 제작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960만원 (44%) 감액된 2,47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6> 의원수첩 등 제작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44,300	44,300	24,700	△19,600	△44

- 이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수첩 및 각종 현황판 등을 기 제작·배포한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임.

- 의원수첩 및 각종 의회 현황판 등은 원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2년에

1번씩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나, 매년 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가 4월에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격년마다 제작하기 보다는 보궐선거(또는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등으로 새롭게 의원직을 가지게 되거나 일부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수첩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설명서 p.43>

- 시의원의 법정 의정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5억 2,800만원(6%) 증액된 93억 946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7> 의정활동수행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8,781,454	8,781,454	9,309,458	528,004	6

-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의원 정수 증가(106명→110명), 월정수당 인상분(1명당 월 3,815,000원→3,914,190원)을 반영³⁾하고,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기준”) 개정³⁾에 따라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가 신설(의회비 항목 10개→11개)되었기 때문임.

3) 다만, 2018년 11월 27일 개최된 ‘제10대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월정수당을 ‘19 ~ ‘20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2.6%)의 50%, ‘21~ ‘22년은 공무원보수인상율을 전부 적용토록 함. 이에 따라 2019년도 서울시의원의 월정수당은 금년대비 연 595천원(월 약 5만원)이 인상될 예정임.

- 최근 2년간 지방의회의 의회비(205)와 관련해 예산편성 기준의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18> 최근 2년간 예산편성 기준 개정내역

구분	편성 기준		
	2016년	2017년 개정	2018년 개정
<u>의정운영 공통경비</u>	의원 1명당 6,100천원 (예결위원 1명당 2,000천원 별도)	총액한도 내 자율 편성 한도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최근 3년평균×1.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평균×1.176) ※의장이 협의회 회장인 경우 30% 추가편성 가능 - 의원국외여비 (최근 3년평균×1.05)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에 30% 범위 내 추가 편성 가능	총액한도 내 자율 편성 한도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최근 3년평균×1.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평균×1.176) ※의장이 협의회 회장인 경우 30% 추가편성 가능 - 의원국외여비 (최근 3년평균×1.05)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에 30% 범위 내 추가 편성 가능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최근 3년평균×1.05) ※ 단, '19년에 한해 의원 1인당 80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 가능
<u>의회운영 업무추진비</u>	의장 5,300천원/월 부의장 2,600천원/월 상임위원장 1,600천원/월		
<u>의원 국외여비</u>	의원정수(106명)×2,000천원 - 25%범위내 조정 가능 -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에 30% 범위 내 추가 편성 가능		
<u>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u>	-	의원역량개발비 신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분리)	의원역량개발비를 '민간위탁' 과 '공공위탁·자체교육' 2개로 분리
<u>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u>	-		
의장협의체 부담금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도의회 의장협의체 부담금	좌동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편성	좌동	좌동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1·2> 참조

- 2017년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3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통계목의 기준경비에 대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그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 또한 2019년에는 의원역량개발비를 ‘민간교육기관 위탁경비’와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및 자체교육비’ 2개로 분리하되, 전자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적용토록 하였음.⁴⁾
- 이와 함께 20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명당 80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8,800만원(110명×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수차례의 의회비 예산편성 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에서 비교적 상세한 편성기준을 제시해 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자율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향후 자치분권 확대라는 국정운영 목표에 맞춰 의회비 항목과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6) 의회 청사 유지관리(초단시간근로자 보수 관련) <사업설명서 p.49>

- 시의회 청사 건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805만원(6%) 증액된 11억 8,176만원이 편성되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편성할 수 있는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통계목을 신설함(‘18년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외래강사료에만 편성하도록 설정). 다만, 과도한 역량개발비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관리토록 함.

<표-19> 의회 청사 유지관리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1,113,707	1,113,707	1,181,755	68,048	6

- 이는 초단시간근로자를 증원(7명→11명)하고 공공요금과 각종 관리 용역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임.
- 초단기간근로자는 효율적인 의회 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 내 문서수발, 환경정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에 따라 2019년 시간당 임금으로 올해(8,613원)보다 287원 인상된 8,900원을 책정했음.

<표-20> 2019년 서울시의회 초단기간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

<p>지급기준 : 1시간 8,900원 ('18년 기준단가에 인상률 적용) - '18년 '단순노무종사원' 평균 임금(8시간) 68,899원 × 1/8 × 인상률(3.4%)</p> <p>※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17년 6월 기준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참조 ※ 인상률은 '17년 인상률 3.4%('16년 66,630원 → '17년 68,899원) 적용</p>	
<p>편성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부임 : 8,900원 × 14시간 × 4주 × 인원 × 12월 - 교통비 : 60,000원 × 인원 × 12월 <p>※ 고용보험료 : 연급여총액(인부임+교통비) × 1.5%* ※ 산재보험료 : 연급여총액(인부임+교통비) × 0.85%**</p>	<p>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액 : 10,148원</p> <p>2019년 서울시의회 초단기간근로자 (시간당) 통상임금(인부임+교통비) : 약 9,971원</p> <p>※ 2019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 8,350원</p>

*고용보험료율(기관부담분) : 1000분의 1.5(실업급여부담율 0.65%, 고용안정부담율 0.85)

- 근로자부담분 0.65%(실업급여부담만 적용)

**산재보험료율(전액 기관부담) : 1000분의 0.85

- 서울시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고용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 중임(「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 서울시는 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중 생활임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 대상자를 결정함.
- 생활임금은 매년 그 수준이 달라지며, 그동안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명 가구 가계 지출 등을 감안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및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10,148원으로 결정된바, 시간당 8,900원의 임금과 월 6만원의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인 시의회 초단기간근로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의회사무처는 관련 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고용한 초단기간 근로자의 임금 조건과 동일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함.
- 의회사무처는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려는 생활임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 조건 개선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의회에 고용된 초단기간근로자가 생활임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함.

7)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설명서 p.75>

-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568만원(3%)이 감액된 1억 4,257만원이 편성되었음.

<표-21>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48,253	148,253	142,574	△5,679	△3

- 이는 유료아이핀 사용료, 기술자 노임 단가 인상, 의회안내 키오스크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문자전송 이용료⁵⁾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 현재 본관에 3대가 설치 운영 중인 키오스크는 의회에 대한 소개와 각종 안내를 통해 의회를 찾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이며 시설 노후화에 따라 새 키오스크를 구매할 계획임.
- 최근 휴대전화를 포함한 각종 개인 모바일 기기의 활용도 증가에 따라 키오스크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 중심의 키오스크 활용방안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 등 사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의회는 의회관련 각종 정보를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해 오고 있으나, 홈페이지 내 자료실 ‘법제정보’란에 의회관련 조례 8건⁶⁾이 누락돼 있는 등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2018.11.15일 기준).
- 향후 법제정보 업데이트 등 홈페이지상에 제공된 정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잘못된 사항이 있거나 현행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즉각 시정

5) 지방의원이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이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제10대 의회에서 폐지함.

6)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2002년 2월 제정), ②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2015년 4월 제정), ③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2018년 7월 제정), ④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2015년 5월 제정), 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2017년 1월 제정), 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18년 5월 제정), ⑦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2017년 9월 제정), ⑧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2017년 3월 제정)

하는 등 홈페이지를 포함한 각종 정보제공 매체 관리·운영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8)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설명서 p.90>

- 의회 소식지 「서울의회」를 발행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209만원(1%) 증액된 9억 1,816만원이 편성되었음.

<표-22>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906,066	906,066	918,156	12,090	1

-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점자판 발행단가(3,510원→4,720원)와 편집시안 검토료(검토위원 4명→6명)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임.

- 의회사무처는 매 회기 종료 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서울의회보’ 45,000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구독희망 시민 등에게 배부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발행 및 배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23> 최근 3년간 의회 소식지 발행 및 배부 현황

연 도 별	발행 횟수	발행부수	1회당 배부현황				비고
			계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구독희망시민	행정망(의회, 시청 등)	
계	16회	690,000	130,000	64,126	58,704	7,170	
2018년	4회	180,000	45,000	25,898	16,587	2,515	
2017년	6회	270,000	45,000	19,986	22,727	2,287	
2016년	6회	240,000	40,000	18,242	19,390	2,368	

- 그러나 2017년 서울의회 소식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치·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13개 중 67개소(31.5%)가 미비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4> 2017년 서울의회 소식지 비치·관리실태 조사결과

구 분		조사건수	비치건수	미비치건수	비고
합 계		213	146(68.5%)	67(31.5%)	
공공기관	소 계	75	59(78.7%)	16(21.3%)	
	구청, 보건소 등	21	17(81.0%)	4(19.0%)	
	동주민센터	45	36(80.0%)	9(20.0%)	
	도서관	9	6(66.7%)	3(33.3%)	
다중이용시설	소 계	138	87(63%)	51(37%)	
	은행	51	38(74.5%)	13(25.5%)	
	병원	38	22(57.9%)	16(42.1%)	
	미용실	7	2(28.6%)	5(71.4%)	
	복지시설	42	25(59.5%)	17(40.5%)	경로당,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 향후 배부처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거나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중 수령을 희망하는 곳을 다시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발행부수나 배부처의 조정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의회 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전체 사업 예산의 1/4(약 25%, 2억 2,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편 발송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예 : e-mail 발송)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표-25).

<표-25> 의회 소식지 발행 예산 중 우편요금 편성안

(단위 : 천원, %)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우편요금 950원*40,000통*6회 = 228,000천원	○ 우편요금 <u>950원*40,000통*6회 = 228,000천원</u>

9)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설명서 p.110>

- 다양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모니터링해 의정활동 활용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22%) 증액된 2억 2,072만원이 편성되었음.

<표-26>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180,720	180,720	220,720	40,000	22

- 이는 여론조사 용역비 단가(1건당 1,400만원→1,500만원)와 횟수(연간 10회→12회)를 확대 조정했기 때문임.

- 의회사무처는 의정 및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청취를 위해 전화·면접·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별첨3 참조).

<표-27>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적

구 분	2016	2017	2018
22건	9건	9건	4건

- 그러나 여론조사의 주제나 내용이 일부 지역에 특정된 경우가 있고, 업체선정 시 수의계약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등 그 절차와 운영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실시 횟수와 예산이 한정된 만큼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특히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한편, 2018년 의정모니터 사업은 전년도처럼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특정 현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로부터 지정과제를 부여받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음.
- 제10대 의정모니터 역시 기존의 방식대로 의원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2년 임기(2018.9.~2020.8.)에 중임과 연임이 가능해

2018.11월 현재 전체 모니터 요원 237명 중 62명(26.2%)이 제9대 후반기에 이어 제10대 전반기에도 의정모니터로 활동 중임(중임은 없음).

- 의정모니터 사업은 특정 현안에 대한 관련 다양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의정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 중임.
- 따라서 장기적인 중·연임을 허용하기 보다는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이 의정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제10대 의정모니터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최소 2명(중구·중랑구)에서 최대 19명(노원구)까지 그 편차가 매우 커 특정 지역과 관련된 시민 불편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 등이 편중되어 제출될 우려가 있음.
- 향후 지역별로 안분해 의정모니터를 추가로 선발함으로써 의견 제출에 있어 지나친 지역편중을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28> 제10대 의회 전반기 자치구별 의정모니터 현황

자치구	인원	자치구	인원	자치구	인원	자치구	인원	자치구	인원
종로구	4명	동대문	16명	노원구	19명	강서구	14명	관악구	8명
중구	2명	중랑구	2명	은평구	15명	구로구	11명	서초구	6명
용산구	5명	성북구	12명	서대문	18명	금천구	5명	강남구	10명
성동구	4명	강북구	3명	마포구	4명	영등포	9명	송파구	18명
광진구	4명	도봉구	12명	양천구	9명	동작구	11명	강동구	16명

10)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설명서 p.114>

-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 786만원 (17%)이 증액된 40억 9,316만원이 편성되었음.

<표-29>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3,485,300	3,485,300	4,093,162	607,862	17

- 이는 일부 사업의 종료에 따른 감액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확대(3억 2,450만원), 주간방송 신규편성(2억 7,716만원), SNS 홍보 강화 및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도입(5,956만원) 등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의회사무처는 각종 언론매체,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및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의정활동 홍보와 광고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그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30> 최근 3년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현황

구분	세부 사업명	2018년 (11.15현재)	2017년	2016년
예산(당초 기준/천원)		3,485,300	3,755,496	1,446,340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배너 광고	•지방분권 보도기획 6회 (동아일보 등 2개사) •언론사 지면·배너광고 2회	•지방분권 보도기획 19회 (동아일보 등 6개사) •언론사 지면·배너광고 4회	•언론사 지면·배너광고 3회
	공동 마케팅 의정광고	•의정모니터 연계 홍보 광고(서울, 내일) 2회	•의정모니터 연계 홍보 광고(서울, 내일) 2회	•의정모니터 연계 홍보 광고(서울, 내일) 2회
	기타 홍보광고	•주요포털(네이버·다음) 브랜드 검색 광고 11회 •서울신문 Pn 활용 홍보	•주요포털(네이버·다음) 브랜드 검색 광고 8회 •서울신문 Pn 활용 홍보	•서울신문 Pn 활용 홍보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지상파 TV 기획 보도 프로그램 제작·방영	•SBS·KBS 기획 프로그램 제작·홍보 제작 추진 중	•SBS·KBS 기획 프로그램 제작·홍보 -SBS 10편, KBS 4편	-
	뉴스전문 채널·중편 의회 홍보프로그램 제작·방영	•의정활동 홍보프로그램 제작·홍보 75회 -YTN 42편, MBN 33편	•의정활동 홍보프로그램 제작·홍보 92회 -YTN 46편, MBN 46편	-
	TBS 현장 의정활동 홍보 프로그램 제작·방영	•현장 의정활동 홍보프로 그램 제작·홍보 -시의회플러스 43편	•현장 의정활동 홍보프로 그램 제작·홍보 101편 -시의회플러스 36편 -조례팩트체크 26편 -TBS조선의원 39명 출연	•현장 의정활동 홍보프로 그램 제작·홍보 44편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방송 제작·홍보	•케이블TV 프로그램 홍보 -딜라이브 TV 4편 촬영 -티브로드 TV 1편 촬영	•케이블TV 프로그램 홍보 -딜라이브 27편 -티브로드 27편	•케이블TV 프로그램 홍보 -티브로드 18편
	TV(CATV)· 라디오(TBS·CBS) 제작·방송	•TV·라디오 광고 제작·방송 -TV캠페인 (CATV) 2편 -라디오 TBS·CBS 1편	•TV·라디오 광고 제작·방송 -TV캠페인 (CATV) 4편 -라디오 TBS·CBS 1편	•TV·라디오 광고 제작·방송 -TV캠페인 (CATV) 3편 -라디오 TBS·CBS 1편
	대중교통 광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 -지하철 PDF 21개역 -지하철 PSD 7개역 -마을버스 7개구 지역버스 32대	• 시내버스 광고 : 4,500대	-
	기타(홍보영상물 제작·홍보 등)	•의회홍보영상물 제작·활용 -개원식용 홍보영상 -청소년용 홍보영상 •제10대 전반기 의회 슬로건 시민공모 선정	-	•제9대 후반기 의회 슬로건 시민공모 선정
	청사옥외 광고판 제작 설치	•지방분권 및 제10대 개원 홍보 등 3회	•지방분권 과제 등 핵심과제 홍보 등 4회	•지방분권 과제 등 핵심과제 홍보 등 4회
	지하철모서리 등 광고	•지하철모서리 등 광고 1,950면	•지하철모서리 광고 - 2,115면 •가로판매대 등 458면	
	게시판 등 유지관리	•상임위 게시판 정비	•상임위 게시판 정비	•상임위 게시판 정비
효과적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연합뉴스·뉴스1·뉴스1 통신사 뉴스서비스 활용	•연합뉴스·뉴스1·뉴스1 통신사 뉴스서비스 활용	•연합뉴스·뉴스1·뉴스1 통신사 뉴스서비스 활용
	기사검색 서비스 이용	•언론스크랩 서비스 활용	•언론스크랩 서비스 활용	•언론스크랩 서비스 활용
소셜미디어 의정홍보	SNS 활용 의정 홍보	•SNS콘텐츠 제작 1,235건 •SNS채널 방문수 929,861회 •소통이벤트 13회 등 •SNS캐릭터 공모선정 개발	•SNS콘텐츠 제작 1,441건 •SNS채널 방문수 918,537회 •소통이벤트 5회 등	•SNS콘텐츠 제작 925건 •SNS채널 방문수 664,832회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다각
적인 의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 대한 대시민 인지도와 호감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홍보방법과 매체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됨.

- 특히 제10대 의회 개원 2년차를 맞아 지방의회 위상 및 역량 제고, 자치분권 강화의 골든타임(Golden-Time)임을 감안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매체별, 방법별, 시기별 홍보 및 광고의 효과성을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차후 홍보계획에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
- 한편 2018.11.15일 기준, 전체 사업예산 집행률이 45.8%⁷⁾에 불과하고 분기별 예산집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다 계획성 있고 월별·분기별로 균형감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31> 2018년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 집행 내역(원인행위 기준)

(11.15 기준 /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2018	3,485,300 (누적집행율)	396,612 (11.4)	493,266 (25.5)	226,665 (32.0)	479,704 (45.8)	1,596,247	45.8

7) 다만,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의회사무처(언론홍보실)에서는 주요 미집행 사업인 '방송·영상물 제작 및 송출'의 경우 6.13 지방선거와 제10대 개원 이후 집중되었고, 프로그램 제작·송출 완료 후 예산집행 처리되고 있어 12월중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당초 계획대로 집행 시, '18.12월말까지 3,220백만원 집행예정(92.4%)】

11)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설명서 p.124>

-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사업은 자매도시 방문과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속적인 교류사업 강화와 의정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75만원 (3%) 증액된 7억 2,697만원이 편성되었음.

<표-32>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699,223	699,223	726,968	27,745	3

- 의원국외여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한 증액 이유는 제10대 의원정수 증가(106명→110명)로 인한 의원 국외여비(1,775만원)와 이에 따른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1,000만원)를 증액했기 때문임.

<표-33> 제10대 의회 의원국외여비 편성 예상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원칙 ⁸⁾	361,725	375,375	375,375	375,375	375,375
추가분 ⁹⁾	108,518	112,613	112,613	112,613	112,613
총계	470,243	487,988	487,988	487,988	487,988

8)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2018년도 예산(361,725천원)을 기준으로 1인당 비용을 산정한 후 의원정수를 곱해 산출함
 [(18년 기준액, 361,725천원) ÷ 106명 * 110명]

- 제9대 의회 자매도시 및 상임위원회 해외비교시찰 참여 현황을 비교해보면, 자매도시 방문의 경우 평균 의원 9명당 공무원 3.5명이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해외비교시찰의 경우 의원 10명당 공무원 3.1명이 수행하고 있음(표-34).

<표-34> 제9대 의회 자매도시 방문 및 해외비교시찰 참여(의원, 수행직원) 현황

구분	의원참여수	수행직원수	직원1명당 의원수	직원1명당 여비
자매도시 방문	평균 9명	평균 3.5명	2.6명	180만원
해외비교시찰	평균 10명	평균 3.2명	3.1명	320만원

- 최근 「공공외교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 제정되는 등 외교활동의 행위자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방의회 외교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시의원의 대내·외 위상에 걸맞는 의원외교 활동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실제 의원외교활동 추진 과정에서도 수행 공무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해외자매도시를 비롯한 선진의회와의 교류협력에 탁월한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9)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해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함.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담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요구되나, 단기적으로 의원외교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행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차원의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국외여비의 일부 증액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임위원회 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 방문 추진 시 의정담당관(교류협력팀)의 역할이 미비해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타 부서 수행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므로 의정담당관(교류협력팀)은 상임위원회와 타 부서 수행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12)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업설명서 p.128>

- 전국 시·도의회 간 상호 교류활동과 상임위 세미나 참석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20만원(4%) 증액된 2억 5,554만원이 편성되었음.

<표-35> 국내 의정활동 교류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245,340	245,340	255,540	10,200	4

-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발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등 지방의회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광역의회 간 활발한 교류협력과 연대 활동이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2016년 72%, 2017년 30.1%, 2018년 (11.15일 기준) 47.4%에 불과한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표-36> 국내 의정활동 교류 예산 최근 3년간 집행률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2018 (11.15. 기준)	245,340	116,234	47.4	129,106
2017	414,540	124,941	30.1	289,599
2016	163,200	117,425	72.0	45,775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광역의회 간 의정교류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13)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설명서 p.132>

- 지방의회 발전 및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해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시의회 정책대안으로 활용하기 사업

으로, 전년대비 1억 45만원(10%) 증액된 10억 4,415만원이 편성되었음.

<표-37>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943,700	943,700	1,044,150	100,450	10

- 이는 의원역량강화TF 제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예산(1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임.
- 의회사무처는 연구용역 계약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해왔음.
 - 이는 연구용역 수행이 전문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입찰가격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그들의 제안서를 평가함으로써 양질의 연구 결과를 얻고자 함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⑬ 생략

-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업체 선정 시 유효입찰이면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개최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만, 입찰이 두 번 유찰되면 적격심사낙찰제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이후 한 번 더 유찰 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함.

[연구용역 계약업체 선정]

■ **입찰공고**

- 참가자격 :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 및 단체 등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유효입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2차 공고) 유찰 시 적격심사낙찰제로 입찰공고(3차 공고)**
 - *적격심사낙찰제 일반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추진

- 의회사무처의 ‘2018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에 따르면 1. 우수한 연구기관의 입찰 참여를 유인하고, 2. 연구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연구보고서의 품질을 높여 정책제언, 조례 제·개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건당 최소 3,500만 원 이상의 연구비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2018년 계약 체결된 연구용역 32건 중 6건만이 최초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이 체결됐고, 2차례 유찰 끝에 적격심사를 통해 체결된 연구용역은 13건(40.6%)이나 됨(별첨4 참조).
 - 4건은 적격심사낙찰제 공고에서도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추진됨.
-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이 2차례 유찰되면 적격심사낙찰제로 입찰

공고를 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준은 ‘입찰가격’임(100점 만점 중 65점, 낙찰하한율 80.5%).

- 결국 과제제안서나 업체의 연구 역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커 애초에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한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우수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인하고 질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연구용역 계약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제선정,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관리·운영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까지 상임위원회가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법담당관은 상임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 주관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14)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업설명서 p.147>

- 서울시의회 법규집 발간과 지방분권 T/F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535만원(53%) 증액된 7,275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T/F 사업비 일부를 증액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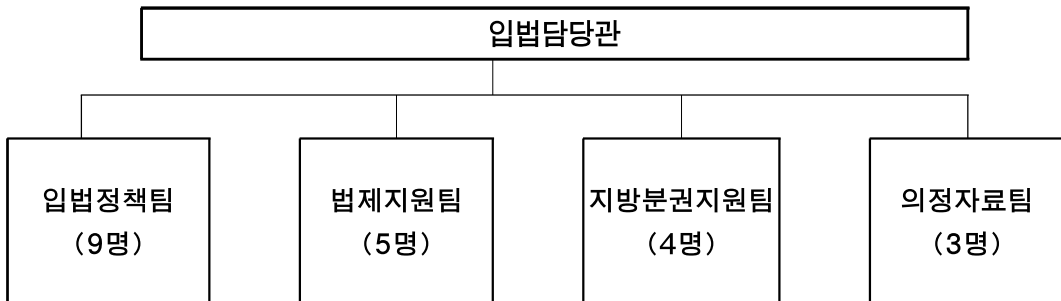
<표-38>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47,400	47,400	72,745	25,345	53

- 이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법규집 발간을 제외하고는 ‘지방분권 전국회의’, ‘지방분권 토론회’, ‘지방분권 아카데미’, ‘지방분권 TF 위원 워크숍’ 등 사업 명칭과는 달리 임시조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분권 T/F 활동 관련 예산이 대부분으로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입법담당관은 2011년 5월,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서 의뢰한 조례안의 적법성 검토, 지방의회 법제운동 및 조사·연구 등 의원 입법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2개팀, 11명)된 이후 세 차례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는 4개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39> 입법담당관 조직 현황



- 입법담당관은 자치법규 입안 및 기타 법제 지원(2018.10.15.기준 138건)을 비롯한 입법조사회답서서비스(2018.10.15.기준 24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민선 7기 제1차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분권지원팀’을 신설해 지방분권 T/F 업무 전담과 입법조사회답서서비스, 각종 입법관련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인 바, 당초 입법담당관의 신설 취지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인력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5)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사업설명서 p.162>

-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및 언론 등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결산 토론회와 재정분권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20만원(32%) 증액된 3,38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40>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25,600	25,600	33,800	8,200	32

- 이는 재정분권토론회 개최 예산(820만원)이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임.

- 서울시의회는 매년 예·결산 심의를 앞두고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41> 최근 3년간 예·결산 토론회 개최 현황

구 분	일시	장소	참석자	소요예산	비고
결산 토론회	2016. 6. 7.	제1대회의실	약 150명	5,200천원	2018년은 미개최
	2017. 6.12.	제1대회의실	약 100명	5,000천원	
예산 토론회	2016.11.23.	제1대회의실, 5,7층 회의실	약 300명	10,627천원	
	2017.11.23.	제1대회의실	약 100명	5,176천원	
	2018.11.19.	제1·2대회의실	약150명	9,600천원	

- 그러나, 예·결산 토론회가 형식적이고 1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제 예·결산 심의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음.
- 각종 토론회 개최 결과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등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16)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설명서 p.167>

- 시민생활에 동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350만원 증액된(63%) 1억 3,75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제10대 개원 2년차를 맞아 의정활동 활성화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수요의 증가(30회→50회)를 예상해 증액했기 때문임.

<표-42>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84,000	84,000	137,500	5,350	63

-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최근 3년간 공청회·토론회 개최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43> 최근 3년간 공청회·토론회 개최 실적('18.10.15.기준)

(단위 :회)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19	47	53	19
공청회	18	9	8	1
토론회	101	38	45	18

- 그러나 공청회·토론회의 실제 업무 추진 시 예산정책담당관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업무가 더 많아 주관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예산정책 담당관은 공청회·토론회 주관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2) 기타사항

1) 기본경비(2019년 인력 증원 관련)

<예산안 p.1672>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비로서, 2019년 조직 개편으로 시의회사무처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보다 5,648만원 증액된 14억 5,923만원이 편성됨.
- 민선7기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은 2019년 초까지 2차례 이루어질 예정으로, 2019년 예산안에는 예산 편성과 관련 조례 개정 시기상의 이유로 2018.11.1일자로 시행된 1차 개편 인원(10명)만 반영됐음.

<그림-1> 2018.11월 기준 민선7기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 시기

6~10월	예산 편성, 예산(안) 의회에 제출 (10.31일 제출)	8.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차 개편) 8.16.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차 개편) 9.14.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의결 (1차 개편) 10.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차 개편) 10.17.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차 개편)
11월	예산안 심의·의결 (12.20일 예정)	11.1. 1차 조직 개편 시행 (의회사무처 10명 증원) 11.23.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사 예정 (2차 개편)
12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의결 예정 (2차 개편)
2019.1월		1.17. 2차 조직 개편 시행 예정 (의회사무처 18명 증원)

- 따라서 2차 조직 개편을 포함한 관련 조례가 향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증원 예정인 인원(18명)을 반영해 기본경비를 증액함으로써 원활한 조직 운영 및 사업 수행을 기할 필요가 있음.

[별첨1]

2017년 「예산편성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

현 행	개 정
<p>【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u>< 신 설 ></u></p> <p>1. 의정운영공통경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p> <p>-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p>	<p>【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p> <p>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p> <p>○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의 3개 통계목</p> <p>○ (총액한도 산정방법)</p> <p>{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p> <p>○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p> <p>※ 최초 2018 ~ 2021년 적용</p> <p>※ 단,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p> <p>* (예시) 의회관련경비 중 일부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p> <p>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1. 의정운영공통경비</p> <p>① (현행과 같음)</p> <p>-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p>

현 행		개 정													
<p>소요경비 예산편성</p> <p>② <u>기준액</u></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편 성 기 준 (연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td> <td>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td> </tr> <tr> <td>시·군·자치구</td> <td>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td> </tr> </tbody> </table>		구 분	편 성 기 준 (연간)	시·도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시·군·자치구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p>예산편성</p> <p>※ 위탁교육비는 신설되는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과목에 계상</p> <p>② <u>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p> <p><표 삭 제></p>							
구 분	편 성 기 준 (연간)														
시·도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시·군·자치구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p>③ <u>증액편성</u>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p> <p>*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p> <p>- 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 + (안건처리실적*0.5)</p>		<p>③ <삭 제></p>													
<p>2. 의회운영업무추진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p> <p>② <u>기준액(시·도)</u> (단위 : 천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의 장</th> <th>부의장(1인당)</th> <th>상임위원장(1인당)</th> </tr> </thead> <tbody> <tr> <td>서울·경기</td> <td>5,300</td> <td>2,600</td> <td>1,600</td> </tr> <tr> <td>기타 시·도</td> <td>4,200</td> <td>2,100</td> <td>1,300</td> </tr> </tbody> </table> <p>-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자치부 기준액(기타 사·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p> <p>※ <신 설></p> <p>※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p>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서울·경기	5,300	2,600	1,600	기타 시·도	4,200	2,100	1,300	<p>2. 의회운영업무추진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p> <p><표 삭 제></p> <p>- <삭 제></p> <p>※ 단,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p> <p>※ ----- ---예산편성액을-----</p>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서울·경기	5,300	2,600	1,600												
기타 시·도	4,200	2,100	1,300												

현 행	개 정
<p>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p> <p>② 편성기준 : 의원 정수×2,000천원(기준액)</p> <p>-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p> <p>-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p> <p>(이하 생략)</p>	<p>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p> <p>- <삭 제></p> <p>- (현행과 같음)</p>

[별첨2]

2018년 「예산편성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신설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 관리

현 행	개 정
<p>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p>	<p>제4조(기준경비) (현행과 같음)</p> <p>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p>
<p>【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p> <p>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p> <p>○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3개 통계목</p> <p>○ (총액한도 산정방법)</p> <p>- 총액한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p> <p>* <신설></p> <p>○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 ~ 2021년 적용)</p> <p>※ <신설></p> <p>㉕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4. <신설></p>	<p>【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p> <p>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p> <p>○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u>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u> 4개 통계목</p> <p>○ (총액한도 산정방법)</p> <p>- 총액한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u>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u>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297)}</p> <p>* 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로 편성</p> <p>○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 ~ 2021년 적용)</p> <p>※ 20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인당 0.8백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 가능</p> <p>㉕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4.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p>

현 행			개 정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원의 민간교육 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 목	설정(통계목 포함)	그룹	편성 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07. 의원역량개발비	200	205 의회비	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 교육)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 국가기관 도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2.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 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좌동
		08. 의장협의체 부담금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09. 의장협의체 부담금
		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별첨 3]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세부 현황

□ 2016년

연번	연도	조사주제	조사 방법	조사대상	신뢰구간/ 오차범위/ 응답률	조사기관	계약방식	금액 (천원)	비고
1	2016	<u>수도권</u> <u>서부광역철도</u> <u>마포구민</u> <u>인식조사를 위한</u> <u>시민여론조사</u>	전화+ 면접	마포구 거주 만19세 이상 주민1,000명	95% 신뢰구간 / ±3.1 %p	우리리서치 앤 컴퍼니	<u>일반수의</u> <u>계약</u>	10,450	언론보도 : 1건 게재
2	2016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전화+ 면접	서울 거주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95% 신뢰구간 / ±3.1 %p	리서치테라	<u>일반수의</u> <u>계약</u>	14,550	언론보도 : 5건 게재
3	2016	유해화학물질로부 터 안전한 서울을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연구에 대한 여론조사	면접	유해화학물질 분야관계자 522명	95% 신뢰구간 / ±4.3 %p	리서치DNA	<u>일반수의</u> <u>계약</u>	10,670	언론보도 : 3건 게재
4	2016	자국민중심의 동화정책에서 다문화정책으로의 재정립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전화+ 면접	일반서울시민 700명 / 사업 관계자 500명	95% 신뢰구간 / ±3.7 %p	케이에스 오아이	<u>일반수의</u> <u>계약</u>	14,350	시정질문 (16.11.29)
5	2016	서울시 청소년시설운영실 태 및 이용청소년의 만족도 여론조사	면접	서울시 청소년 시설 이용자 1,900명	95% 신뢰구간 / ±2.2 %p	월드리서치	전자공개 수의계약	21,857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6	2016	<u>수도권</u> <u>서부광역철도</u> <u>양천구민</u> <u>인식조사</u>	전화+ 면접	서울시 양천구 거주 만19세 이상 1,200명	95% 신뢰구간 / ±2.8 %p / 8.2%	한국인텔리서 치	<u>일반수의</u> <u>계약</u>	14,212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7	2016	<u>상암DMC</u> <u>롯데복합쇼핑몰</u> <u>입주에 대한</u> <u>여론조사</u>	면접	상암동 인근 주민 :400명 상암동 인근 상인 :100명	95% 신뢰구간 / ±4.4 %p	리서치테라	<u>일반수의</u> <u>계약</u>	9,500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연번	연도	조사주제	조사 방법	조사대상	신뢰구간/ 오차범위/ 응답률	조사기관	계약방식	금액 (천원)	비고
8	2016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 도입 찬반	온라인	유아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학부모 1,000명	95% 신뢰구간 / ±3.1 %p / 33.4%	마크로밀 엠브레인	<u>일반수의 계약</u>	11,400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9	2016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통합 관련 시민여론조사	면접	지하철 이용 서울시민 1,000명	95% 신뢰구간 / ±3.1 %p	유니온리서 치	전자공개 수의계약	17,474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 2017년

연번	연도	조사주제	조사방법	조사대상	신뢰구간/오차범위/응답률	조사기관	계약방식	금액(천원)	비고
1	2017	지방의회발전(지방의원 역량강화)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전화	서울지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95% 신뢰구간 / ±3.1 %p / 15.7%	글로벌 리서치	일반수의 계약	10,925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2	2017	학원 운영시간 관련 시민여론조사	전화+온라인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95% 신뢰구간 / ±3.1 %p	케이에스 오아이	전자공개 수의계약	11,683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3	2017	황단보도 쉼터 이용만족도 시민여론조사	면접	황단보도 쉼터를 이용해 본 만 20-69세 성인 남녀 500명	95% 신뢰구간 / ±4.4 %p	피엠아이	전자공개 수의계약	10,809	조례개정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4	2017	노동시간 단축 및 일 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직장인 인식조사	전화	서울시민 중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 1,500명	95% 신뢰구간 / ±2.5 %p / 0.5%	한국인텔 리서치	일반수의 계약	13,800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5	2017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서울시민 여론조사	전화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용한 서울시민 1,500명	95% 신뢰구간 / ±2.5 %p / 5.1%	리서치DNA	일반수의 계약	13,015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6	2017	서울시 청소년활동 시설이용 청소년 만족도 여론조사	면접	서울시 청소년 시설 이용자 중 14-24세 청소년 2,100명	95% 신뢰구간 / ±2.1 %p	서울마케팅 리서치	전자공개 수의계약	26,287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7	2017	서울형 도시재생정책 관련 시민여론조사	전화	서울시민 1,500명	95% 신뢰구간 / ±2.5 %p / 9%	리서치DNA	일반수의 계약	13,100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8	2017	서울시 노점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면접	서울시민 및 노점상인 1500명	95% 신뢰구간 / ±2.5 %p	위더스 데이터 시스템	전자공개 수의계약	15,357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9	2017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온라인+면접	서울시 거주 기혼여성 1000명	95% 신뢰구간 / ±3.1 %p	한국갤럽 조사 연구소	일반수의 계약	16,200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 2018년

연번	연도	조사주제	조사 방법	조사대상	신뢰구간/ 오차범위/ 응답률	조사기관	계약방식	금액 (천원)	비고
1	2018	서울교통공사의 광고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전화	서울시민 1000명	95% 신뢰구간 / ±3.1%P / 10%	넷츠플러스	전자공개 수의계약	13,486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2	2018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전화	서울시민 1000명	95% 신뢰구간 / ±3.1%P / 10%	넷츠플러스	전자공개 수의계약	13,556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3	2018	항공기소음 피해 및 대책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전화+ 면접	양천구민 1100명	95% 신뢰구간 / ±2.9%P / 12.5%	리서치DNA	일반수의 계약	14,000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
4	2018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관련	전화+ 면접	서울시민 및 중고생 1000명	-	타임리서치	일반수의 계약	14,352	조사 진행 중

※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기관 경력 관련 사안은 필수자료가 아니므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

※ 조사방법 중 면접조사의 경우, 비확률표본으로 진행하여 응답률 추출되지 않음

[별첨4]

2018년 학술 연구용역 실시 현황

	연구과제명	주제 소관	수행기관	당초연구비 (천원)	낙찰가 (천원)	입찰일	수행기간
1	서울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 및 주민참여 협치방안	의회사무처	국가경제연구원	35,000	28,960	3.13 3.26 4.4	7.31~10.30 (3개월)
2	지방분권 강화를 대비한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조정 및 조직 개선방안	의회사무처	한국공공자치연구원	35,000	25,720	3.20 4.2 4.4	5.3~9.2 (4개월)
3	한국인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배려문화 확산 방안	의회사무처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5,000	28,525	3.23 4.16 4.25	5.23~9.21 (4개월)
4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의회사무처	한국자연환경연구소	35,000	30,657	3.23 4.5 4.25	5.29~9.28 (4개월)
5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진단 및 예방체계 구축방안	의회사무처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35,000	33,300	3.13 3.26	4.11~8.10 (4개월)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방안	의회사무처	디자인 오아시스	35,000	28,907	3.13 3.26 4.4	7.26~10.25 (3개월)
7	미래 사회변화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역할 정립	운영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3,320	20,974	3.23 4.16 4.25	6.28~9.9 (2.5개월)
8	지방의회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체계 구축 연구	운영위원회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3,650	21,400	3.20	4.19~7.20 (3개월)
9	서울시의회 정책소통 및 홍보전략 연구	운영위원회	소프트하우스 코리아	23,030	18,790	3.23 4.16 4.25	5.23~8.22 (3개월)
10	서울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체계의 제도 정비 방향 연구	행정자치위원회	동덕여대 산학협력단	35,000	33,794	4.3 4.16	6.21~10.20 (4개월)
11	주민자치회 실태 진단과 의회와의 협력 방안 연구	행정자치위원회	한국생활자치연구원	35,000	25,452	4.3 4.16	5.25~9.24 (4개월)
12	디지털도시 서울의 사회문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기획경제위원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35,000	28,515	4.17 4.30	6.5~10.4 (4개월)
13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센터를 중심으로)	기획경제위원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35,000	31,350	4.17 4.30	6.5~9.21 (3.5개월)
14	서울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25,000	20,728	3.13 3.26 4.4	7.23~10.22 (3개월)
15	서울 미세먼지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배출원 통합 인벤토리 운영 제도 연구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국종합경제연구원	45,000	36,388	3.13 3.26 4.4	4.25~9.23 (5개월)

	연구과제명	주제 소관	수행기관	당초연구비 (천원)	낙찰가 (천원)	입찰일	수행기간
16	서울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월드브릿지	35,000	34,900	4.3	4.27~8.10 (3.5개월)
17	서울특별시 지역축제의 주민 참여도 제고 방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분좋은큐엑스	35,000	28,280	4.3 4.16 4.25	5.24~8.23 (3개월)
18	서울시 여성·아동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위험 대응 방안	보건복지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35,000	34,282	4.3 4.16	5.31~8.30 (3개월)
19	반려견 100만 마리 시대의 전주기적 문화 조성과 규정 정비 방안	보건복지위원회	수암생명공학 연구원	35,000	31,818	4.3 4.16	5.21~8.20 (3개월)
20	음압 고품속에 의한 하수 구조체의 상용화 거리 이송 시 발생하는 물성변화 및 곡관부 마모 대책 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19,574	4.17 4.30 5.10	7.13~10.12 (3개월)
21	서울시 재난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활동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30,000	29,790	4.17 4.30	6.21~10.20 (4개월)
22	다중이용시설 안전역량 확보 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피앤티컨설팅	20,000	16,520	4.17 4.30 5.10	5.31~7.30 (2개월)
23	서울특별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실과 과제 -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35,000	32,270	4.3 4.16	6.14~11.13 (5개월)
24	서울특별시 위반건축물 현황 및 발생 억제 방안 연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한국건축안전센터	35,000	28,195	4.3 4.16 4.25	5.23~8.22 (3개월)
25	신정차량사업소 소음 피해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교통위원회	한국종합경제 연구원	40,000	32,541	4.17 4.30 5.10	6.5~10.4 (4개월)
26	수도권 통합교통공사 설립에 관한 연구	교통위원회	한국종합경제 연구원	30,000	24,177	4.17 4.30 5.10	6.5~9.4 (3개월)
27	지역기반 초등학교 신설 및 과밀학군 해소방안	교육위원회	한국행정학회	25,000	20,386	4.6 4.30 5.10	6.28~9.27 (3개월)
28	다문화 교육 실태 및 정책 연구	교육위원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00	19,305	4.17 4.30 5.10	8.21~11.20 (3개월)
29	4차산업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교육 시스템 연구방안	교육위원회	한국교육연구소	25,000	21,827	4.17	5.31~8.30 (3개월)
30	서울특별시 각종 기금운용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추가발주)	의회사무처	재정성과연구원	30,000	24,250	9.14	10.2.~12.30 (3개월)
31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재정통제에 관한 연구 (추가발주)	의회사무처	한국지방자치 연구원	30,000	22,663	9.14	10.2.~12.30 (3개월)
32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의원 역량 강화 방안 (추가발주)	운영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60,000	50,397	9.27	10.11.~12.30 (3개월)